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 업무내용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Ex)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시공

■ 등록기준

1. 기술능력

4인 -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유허관리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기계공정설계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산업기사	토목, 건축, 유허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건설기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기계공정설계, 전기, 전기공사, 수질환경, 화공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2. 시설·장비

사무실	장비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	1.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화학적 산소요구량 - 부유물질 - 총 질소(TN) 및 총 인(TP) - 대장균 군수 - 염소이온농도 2. 장비제도설비 1조(組) 이상 또는 제도 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신규등록 소요기간

평균 30~45일 이내 소요